

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 
제2차 본 회의(2016.12.9.)

#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



총무위원회

# 목 차

1	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.....	1
2	거창군청 및 읍·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.	3
3	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.....	5
4	거창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.....	7
5	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.....	10
6	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	13
7	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....	15
8	해족순산업 공장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.....	17
9	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.....	20

#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16. 11. 21.

나. 발 의 자: 강철우 의원 대표발의(표주숙, 변상원, 이성복, 박희순의원)

다. 회부일자: 2016. 11. 25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6. 12. 6.

## 2. 제정이유

-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,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(안 제1조)

나. 군수의 책무를 명시함(안 제3조)

-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 시책 마련 및 추진, 관계법령의 책무 성실 이행

다.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대해 규정함(안 제4조)

-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수립·시행: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,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,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포함

라. 복지단체 보호·육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(안 제5조)

마.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함(안 제6조)

바.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시행을 명시함(안 제7조)

## 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가. 이 조례안은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5.11.21. 시행됨으로 「장애인보호법」에서 총괄적으로 지원계획 되었던 사항을 발달장애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분 지원하는 내용으로
- 나.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의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

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## 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##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# 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##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# 거창군청 및 읍·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16. 11. 25,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: 2016. 11. 25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6. 12. 6.

## 2. 개정이유

- 군민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·면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른 읍·면 기관명을 변경함

## 3. 주요내용

- 읍·면 기관명 변경함(안 별표)
  - 거창읍사무소 ⇒ 거창읍 행정복지센터
  - 위천면사무소 ⇒ 위천면 행정복지센터
  - 가조면사무소 ⇒ 가조면 행정복지센터

## 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가. 이 조례안은 군민 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·면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읍·면 기관명을 변경하는 것으로
- 나.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의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

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-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- 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- 8. 심사결과: **원안가결**
- 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#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16. 11. 25,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: 2016. 11. 25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6. 12. 6.

## 2. 개정이유

- 「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」 전부개정(2015.4.02.)에 맞춰 조문체계를 정비하고, 증설투자비 지원 신설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조문체계 정비함

- (현행) 총칙- 투자유치 지원체제 -외국인투자의 지원 - 국내기업 투자지원 - 보칙
- (변경) 총칙- 투자유치 지원체제- 국내기업 투자지원 - 외국인투자의 지원 - 보조금의 사후관리 등 -보칙

- ※ 「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」 전부개정(2015.4.02.)에 맞춰 조문 체계 정비 : 이 조례의 주 적용대상인 국내기업 투자지원 내용을 외국인투자의 지원 보다 앞에 기술하여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함

나. 투자유치위원회 정비(안 제3조)

○ 위원장 변경: 공동위원장 ⇒ 군수

다. 관내기업 증설투자비 지원 신설(안 제12조)

라. 산업용 부지 매입 및 임대지원 조항 신설(안 제15조)

마. 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조항 신설(안 제25조)

○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사업계획서상 사업 이행 의무 명기

#### 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가. 이 조례는 「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」의 전부개정에 따라 이에 맞춰 조문체계를 정비하고,

나. 증설 투자비 지원 신설 및 국내기업 투자지원을 외국인 투자지원 보다 앞에 기술하여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 정비하는 것으로

다.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

##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##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#### 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####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### 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####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

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 
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
**심 사 보 고 서**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16. 11. 25,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: 2016. 11. 25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6. 12. 6.

## 2. 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재기재하여 발생하는 법령 불부합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만 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제명 및 목적조항 정비함(안 제명, 제1조)

-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
  - ⇒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- 근거: 법 제60조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되어있던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이 법에 명시되어 있어 위임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제명 및 목적조항에서 관련 내용 삭제함

나. 위원회 구성관련 법령 재기재사항 삭제함(안 제2조)

- 법령개정사항(위원장이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, 위촉위원 중 관련 단체 또는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조항 삭제, 위촉위원 임기규정 신설) 미반영으로 법령불부합하여 삭제

다. 위원회 기능관련 법령 재기재사항 삭제함(현행 제4조)

- 법령 개정사항(관련 업체가 구매가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, 과징금에 관한 사항) 미반영,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“자문” 기능까지 조례에 규정하여 법령 불부합하여 삭제

라. 영 제109조에서 위임한 위원회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(안 제2조 ~ 제8조)

- 위원장의 직무, 부위원장, 간사, 회의, 심의요청, 의견청취, 수당, 운영세칙
- 거창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

## 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가.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위임된 사항만 조례로 규정하고
- 나. 조례 제명 정비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의 재기재 및 확인하는 내용은 삭제하는 사항으로
- 다.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

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## 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**원안가결**

9. 소수의견 요지: **해당없음**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**해당없음**

#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16. 11. 25,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: 2016. 11. 25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6. 12. 6.

## 2. 개정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(‘16.7.12.시행)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일자리창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개정(‘16.7.12.) 내용 반영
  -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수익계약 대부 등이 가능한 공유재산 대상 삭제(안 제23조)
    - 근거: 조례 위임근거인 영 제29조제1항제7호 삭제됨
  - 일자리창출시설 대부료 감면규정 신설(안 제30조제6항)
    -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일자리창출 시설의 경우 대부료를 50퍼센트 이내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함
  - 대부료, 매각대금, 변상금 분납 이자율,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

자율 삭제(안 제28조제2항제4항, 제35조제3항, 제81조제1항, 제81조의2)

- 이유: 분납 이자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에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
- 근거: 영 제32조, 제39조, 제81조, 제82조

나.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(위임행정규칙) 제정 사항 반영 (안 제34조제4호)

- 「사도법」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의매각사항 신설

다. 법령과 달리 규정되어 있어 법령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 삭제 및 정비함(안 제12조, 제75조, 제82조제2항)

- 매각대금 등의 사용,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, 은닉 공유재산 신고자 보상관련
- 근거: 영 제10조, 제84조제3항, 제90조

라. 감정평가의뢰대상 확대(자치법규 정비과제 정비)(안 제71조, 제83조)

- (현행)감정평가법인 ⇒ (개정)감정평가업자
- 영 제27조(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) 개정으로 일반재산 매각교환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확대함에 따라 그 입법취지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

마. 그 밖에 인용 법령 및 조문 등을 변경함

## 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가. 이 조례는 상위법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반영하였으며
- 나.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시설과 문화시설 등에 대한 대부료 감면규정을 신설 하는 등,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사항으로서
- 다.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

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## 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##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# 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##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[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 ]  
**심 사 보 고 서**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16. 11. 25,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: 2016. 11. 25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6. 12. 6.

## 2. 개정이유

- 6.25참전 및 월남참전 유공자와 전상·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, 순직군인의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을 통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,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추가 지원대상인 전상·순직·공상군인에 대하여 정의함  
(안 제2조제7호 ~ 제9호)
- 나. 명예수당 지급대상 추가함(안 제10조제1항제1호나목)
  - 참전유공자와 전상·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, 순직군인의 유족: 월 3만원

## 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가. 이 조례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규

정에 의한 6.25참전 및 월남참전 유공자와 전상·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, 순국군인의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을 통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것으로

나.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**

**6. 토론요지: 해당없음**

**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**

**8. 심사결과: 원안가결**

**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**

**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**



#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16. 11. 25,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: 2016. 11. 25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6. 12. 6.

## 2. 개정이유

-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할 경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시 미취사 객실 허용 기준에 대한 조례위임사항 신설함(안 제11조)
  -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가목 (2)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

## 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가. 이 조례는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관련법령을 반영한 것으로
- 나. 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시 미취사 객실허용기준에 대한 조례위임사항으로서
- 다.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

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## 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##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# 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##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# 〔해죽순산업 공장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〕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16. 11. 25,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: 2016. 11. 25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6. 12. 6.

## 2. 제안이유

- (주)토디팜코리아는 향산화 능력이 뛰어난 해죽순으로 쌀, 국수 등 관련 상품을 제조·판매할 예정으로, 해죽순 채취 독점권 및 관련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,
- 투자규모, 고용인원, 지역 쌀 우선구매와 쌀소비 촉진 등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, 향후 거창의 대표적인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, 5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대상기업으로 군의회 동의서를 얻어 특별지원이 필요함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기업체 현황

- 기 업 명 : (주)토디팜코리아
- 생 산 품 : 해죽순쌀, 즉석국수, 삼일천하, 해죽순차 등 27여종
- 투자계획
  - 위 치 : 승강기전문농공단지
  - 투자내용 : 500억원 정도 / 200명 정도

## 나. 보조금 지원대상

-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
-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·외 대규모투자기업

## 다. 지원계획

- 입지보조금 지원

지 원 조 건	지 원 방 안	비고
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또는 신규상시고용 300명 이상 ⇒ 대규모투자 특별지원대상	입지보조금 70% 지원 (승강기전문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승강기기업에 대한 보조지원과 동일수준으로 지원)	

※ 기타 고용보조금, 시설보조금 등은 지원범위에 따라 지급

- 지원시기 : 2018년 (신규고용 다음연도 신청, 투자이행 후 지원)

## 라. 소요예산(안)

- 입지보조금 지원 : 70% [단위 : 억원]

구 분	계	도 비	군 비	자부담
입지 보조금 (66,000m <sup>2</sup> )	79.9	8.0	47.9	24.0

※ 분양금액 m<sup>2</sup>당 121천원(평당 400천원)

※ 산 출 식

- 입지보조금 : 분양가의 70% 지원

$$66,000\text{m}^2 \times 121,000\text{원} \times 70\% = 5,590,200,000\text{원} = \underline{55.9\text{억 원}}$$

## 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가. 해죽순산업 공장은 동남아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과 혼합하여 제조되는 해죽순쌀, 국수 등 먹거리 품목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

- 나. 「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」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지원을 할 수 있으며
- 다. 본 군에서 생산되는 쌀로 제조하여 지역쌀 우선구매와 쌀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에 큰 발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
- 라. 거창군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발전 시 거창군 이미지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
- 마. 투자유치 시 보조금 지원 후 사업이 어려울 경우 보조금 상환 등 사후조치가 적극 필요한 사항으로
- 라. 해죽순산업 공장 투자유치 지원 동의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**

**6. 토론요지: 해당없음**

**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**

**8. 심사결과: 원안가결**

**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**

**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**

#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(안)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16. 11. 25,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: 2016. 11. 25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6. 12. 6.

## 2. 공유재산관리계획안(부지매입)

### 가.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

#### 1) 제안사유

- 용도폐지된 국도37호선의 효율적인 재활용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

#### 2)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17년 1월 ~ 2018년 12월
- 사업비 : 11,700백만원(국비 5,850, 도비 1,755, 군비 4,095)
- 주요기능 : 봅슬레이 1.7km, 모노레일 2.5km, 숲 체험시설 등

#### 3) 취득재산의 표시

- 위치 :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024외 64필지
- 대지면적 : 45,589m<sup>2</sup>
- 매입목적 : 스피드 익스트림 조성사업

## 나. 거함산 향노화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

### 1) 제안사유

- 거함산 향노화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취득

### 2)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14년 ~ 2019년
- 사업비 : 9,900백만원(국비 4,950, 도비 1,485, 군비 3,465)
- 주요기능 : 덕유산권 핵심관광 타운

### 3) 취득재산의 표시

- 위치 :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036-1외 10필지
- 대지면적 : 26,463m<sup>2</sup>

## 다. 수승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

### 1) 제안사유

- 농업인의 영농편의 제공 및 고가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경감을 위해 수승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에 따른 토지취득

### 2)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18년 1월 ~ 2018년 10월
- 사업비 : 1,900백만원(국비 800, 도비 240, 군비 860)
- 주요기능 :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사무실 및 농기계 보관창고

### 3) 취득재산의 표시

- 위치 : 경남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190번지 외 1필지
- 대지면적 : 3,438m<sup>2</sup>

## 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가.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스피드 익스트림 조성사업, 거함산 향노화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, 수승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을 위한 것으로

- 스피드 익스프레스타운 조성사업은
    - 무주 ~ 고제간 터널 완료에 따라 용도폐지된 국도37호선의 일부구간을 재활용을 통해 남부백두대간권 핵심산악 레저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무주스키장 등을 연계한 외부관광객의 효과적 유치와 주민일자리 창출·소득증대 전망
  - 거함산 향노화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은
    - 백두대간 폐도(국도 37호선) 주변 생태복원과 체험단지 조성으로 지역자원 활용과 무주스키장 등을 연계한 외부관광객 유치 및 주민소득증대
  - 수승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조성사업은
    - 농업인의 영농편의 제공과 고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해소를 위한 사업으로,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로 농업인의 실질적인 농업경영비 절감과 원거리 농업인의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율 제고
- 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과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
- 다. 사업의 중요성 및 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

#### **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**

#### **5. 토론요지: 해당없음**

#### **6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**



7. 심사결과: **원안가결**

8. 소수의견 유지: **해당없음**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**해당없음**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**해당없음**